

이젠 국산 “꽃”도 원산지표시 꼭 하세요!



국산 농산물 : 220품목(농축수산물표준코드 중분류 기준)

신규 지정 품목

절화류 11품목 :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약용작물류·채소류 3품목 : 백수오, 쑥, 순무(포장된 것)

* 법적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령 ('17년1월1일 시행)

※ 표시대상자 :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모든 사람

표시방법 ①

표시기준

• 국산은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을 표시

〈예시〉 장미(국산), 백합(국내산), 순무(강화군), 백수오(경상북도), 카네이션(중국산)

표시방법

▶ **포장재에 표시하는 경우** : 제품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거나 지워지지 않은 잉크·각인·소인 등을 이용하여 표시

표시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표시 문자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 가능
글자크기	㉠ 포장 표면적이 3,000cm ² 이상인 경우 : 20포인트 이상
	㉡ 포장 표면적이 50cm ² 이상~3,000cm ² 미만인 경우 : 12포인트 이상
	㉢ 포장 표면적이 50cm ² 미만인 경우 : 8포인트 이상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 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 가능)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 포장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면적을 의미함.

▶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풋말, 안내표시판, 일괄안내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하여 표시

구분	제작 크기 기준	
풋 말	가로 8cm×세로 5cm×높이 5cm 이상	
안내표시판	진열대	가로 7cm×세로 5cm 이상
	판매장소	가로 14cm×세로 10cm 이상
스티커(상품에 부착)	가로 3cm×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일괄 안내표시판	가로 14cm×세로 10cm이상,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이상 *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는 사용 불가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 공통사항

표시문자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 가능 *매체 특성상 문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말" 로 표시
글자의 위치·크기·색깔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 * "말" 로 표시할 경우는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제품을 설명하는 것과 같아야 함

▶ 통신매체별 표시방법

구분	전자매체 이용 (인터넷, PC통신, 케이블TV, IPTV, TV 등)	인쇄매체 이용(신문, 잡지 등)
표시 위치	원칙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 허용 :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 이용 가능	원칙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 허용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
표시 시기	대상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	-
글자 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그보다 크게 *글자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라디오 등) 1회당 원산지를 두번 이상 "말" 로 표시	원칙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20이상 허용 : 광고 면적 기준 8~20포인트 이상 *농축산물 포장재 표시기준 준용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	

위반자 처벌사항

▶ 원산지 거짓표시의 처벌기준

 처벌	<p>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습위반자 : 1년이상 10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 '17.6.3시행</p>	 과징금	<p>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 *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한 경우</p>
 위반업체 공표	<p>농관원, 농식품부, 시·도, 시·군,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공표(영업소 명칭, 주소, 위반내용 등)</p>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p>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교육 3개월 이내 이수 * '17.5.30.시행</p>

▶ 원산지 미표시 등 과태료 부과기준

구분		부과기준
미표시	과태료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업체 공표	미표시 2회 이상 위반시(공표내용은 거짓표시와 동일)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미표시 2회 이상 위반시 3개월 이내 원산지표시제도 교육 이수 * 교육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표시방법 위반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
조사거부·방해		100~500만원 이하의 과태료